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2022년도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

제출자	고령군수 (총무과장)
제출연월일	2021. . .

# 2022년도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 출 자 : 고령군수

##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사)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심의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

##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나. 출연 현황(최근 5개년)

(단위 :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0	2022(계획)
금액	1,803,000	1,804,000	1,803,000	1,453,000	1,712,000

다. 세부계획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사업명	금액	관련근거	소관부서
1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발전위원회 운영</li> <li>금고 협력사업비</li> <li>지역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li> </ul>	1,712,000	고령군 교육발전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총무과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고령군 교육발전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정관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출연 계획 세부 명세서 각 1부. 끝.

# 출연계획 세부 명세서

## 1.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사업명	교육발전위원회 목적사업 운영 지원 등		대표자	곽 용 환
추진기관	소재지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설립연도	2003. 10. 21.		
	조직인력	이사회 17명(이사장1, 이사14, 감사2)		
	예산	3,536백만원(2021년)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가야교육원 운영</li> <li>◦ 장학금 지원사업</li> <li>◦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li> <li>◦ 지역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li> </ul>		
주관부서	총무과 교육정책담당			
사업비(출연금)	1,712,000천원			
출연근거(법적근거)	고령군 교육발전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 최근 5년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803,000	1,804,000	1,803,000	1,453,000	1,712,000

### □ 2022년 출연 세부계획

- 출연기간 : 계속사업(2004년~)
- 출연규모 : 1,712,000천원(군비)
  - 교육발전위원회 목적사업운영, 금고협력사업비, 지역 교육여건개선
- 출연용도 : 대가야교육원 운영, 장학금 지원, 청소년국제교류사업, 학교 교육여건개선 지원사업 등 추진
- 출연필요성
  -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명품교육도시 조성과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 필요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 ◆ [고령군 교육발전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금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매년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사용) 군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은 위원회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발췌

### ◆ [사)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정관]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명품교육도시 조성과 미래의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가야교육원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
1.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정보와 국제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관계자 인솔 포함)
1. 지역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대학교 내 향토생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1. 고령군에 주소를 둔 국민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원
1. 우수교원 및 우수학교 육성지원을 위한 포상금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1. 해외유학 등 정규학교 과정이 아닌 교육을 이수중인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군의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군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한 후원사업
1.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